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37호 2020. 8. 28(금)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5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 ----- 27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 ----- 2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05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공람·공고 ----- 31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단장·실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예산집행 품의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정한 대로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물건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완성된 물건을 카드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증명 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

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
2. 제1호 이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국유·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3조(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같음한다.

제14조(보험료의 지급)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청 공통사항 중 제11호 집행품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결재
		담당	팀장	단·실장· 담당관· 과장	국장	부구청장	
11. 집행품의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가. 공사·토지매입 등(추정금액 ¹⁾ 기준)						
	(1). 건당 10억원 초과	기안					○
	(2). 건당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안				○	
	(3). 건당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기안			○		
	(4). 건당 5천만원 이하	기안		○			
	나. 제조·용역·물건의 매입(추정금액 기준)						
	(1). 건당 5억원 초과	기안					○
	(2). 건당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기안				○	
	(3). 건당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기안			○		
	(4). 건당 5천만원 이하	기안		○			
	다. 기타(그 외의 지출)						
	(1). 건당 2억원 초과	기안					○
	(2). 건당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기안				○	
	(3). 건당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임시일상경비	기안			○		
	(4). 건당 5천만원 이하,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납 및 법정경비	기안		○			
	라. 연간지급계획에 근거한 보조금, 위탁금, 전출금, 분담금, 대행사업비, 출연금, 청산금 및 지방채 상환						
	(1). 건당 5천만원 초과	기안			○		
	(2). 건당 5천만원 이하	기안		○			
	1) 추정금액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 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별표 1 구분청 재무과의 13. 공사 및 토지매입, 14. 제조·구매·용역 집행품의 및 15. 기타란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중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동
회 계 책 임 관	자치행정국장	-	-	-	-
징 수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1·2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단장실장 담당관 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단장실장 담당관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 지소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단장실장 담당관 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단장실장 담당관 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단장실장 담당관 과장 서무업무담당	-	각 과 지소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 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서무업무담당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
보건소, 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가. 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2. 제1관서의 경우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 (추정금액²⁾ 기준)

구 분	공사 또는 토지매입	제조·용역·물건매입	기 타
재 무 관	3 억 원 초 과	1 억 원 초 과	5 천 만 원 초 과
분 임 재 무 관	3 억 원 이 하	1 억 원 이 하	5 천 만 원 이 하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구 분	공사 또는 토지매입	제조·용역·물건매입	기 타
재 무 관	5 천 만 원 초 과	2 천 만 원 초 과	2 천 만 원 초 과
분 임 재 무 관	5 천 만 원 이 하	2 천 만 원 이 하	2 천 만 원 이 하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반환금, 지방채원리금, 대행사업비,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위탁금, 보조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2) 추정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별표 5〕

회계담당부서[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추정금액)			비고
	경리(지출)팀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국장	
1. 공사·부동산 매입 계약과 관련된 경비	-	건당 5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건당 3억원 이상	
2. 용역·물건 제조·구매	-	건당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건당 1억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건당 50만원 이상	-	
4. 민간위탁경비	전액	-	-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	전액	
8.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	전액	-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 금 액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또는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 액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과, 분실·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을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거나”로, “회원가입신청서다음”을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생증”을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미성년자의 경우”를 “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도서를”을 “자료를 오손·훼손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된 회원의 정보는 즉시 파기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파기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열람실”을 “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를 “이용자가 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 명의의 회원증을 사용한다.
 6. 도서관 내에서 성착취물,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을 내려받고 설치하거나, 악성 코드를 배포하지 않는다.
 7.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지 않는다.
 8. 절도, 폭력, 협박, 무단침입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일부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은 시간당 단위로 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상업적 행위, 과외 및 영리행위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4. 친목회, 향우회, 송년회, 졸업식 등 일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타”를 “다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19조 중 “위탁관리시”를 “위탁관리 시”로, “언어”를 “받아”로 한다.

제20조 중 “규칙 시행에 관하여”를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_앞면]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도서관에서 작성
단체명 (단체/개인)		대표자 (신청자)	
사용장소	<input type="checkbox"/> 배움터1 <input type="checkbox"/> 배움터2 <input type="checkbox"/> 어울림터	연락처	
사용일시	년 월 일 : ~ :	이용인원	남 명 여 명
사용목적			
사 용 료			
<p>서구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 사항을 확인했으며,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도서관)</p>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 도서관 시설 사용에 따른 연락 및 확인, 이용자 성별 통계 구축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연락처, 성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시설 사용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동 의 동의안함

[별지 제3호서식_뒷면]

()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

본인은 서구 구립도서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용규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사전 신청 정보와 실제 사용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특히 영리, 종교, 정치적 목적 등 시설사용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시 취소된다.
- 시설 내 기자재를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이용자 부주의로 집기류, 장비 등을 훼손할 경우 이를 즉시 변상한다.
- 시설 내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복구한다.
-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흡연·음주를 하지 않는다.
- 시설 사용 인원은 사용 장소 적정 인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 사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임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이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고, 도서관에 법적(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한다.
- 사용 공간 특성에 맞게 사용할 것이며 다른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소음 발생, 쓰레기 정리 등)
- 이용시간 종료 5분전 정리 후 퇴실하며,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위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에 동의하며, 미 준수 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 대표의 동의는 이용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연 락 처	
사 용 장 소	<input type="checkbox"/> 배움터1 <input type="checkbox"/> 배움터2 <input type="checkbox"/> 어울림터		
사 용 일 시	. . . : ~ . . . :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일금 원 (₩)		
허 가 조 건	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제6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를 “이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통기준: 감경 50% 적용 (제2조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6. 만 65세 이상의 고령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8.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9. 만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10.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305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18호(2004.12.02.)로 경서2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94호(2008.12.0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30호(2020.06.22.)로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득하여 사업 시행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020. 8.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시행기간: 2008.12. 8. ~ 환지처분일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공종구분	단위	사 업 량		비 고
		세부공종	수량	
부지조성	m ²	34,012.4		
포 장 공	m ²	아스콘표층	6,967	
		소파보수	1,819	
	m	경계석 설치	2,301	
배 수 공	m	우수관로	1,054	
	EA	우수맨홀	22	
		우수받이	63	
	m	오수관로	715	
	EA	오수맨홀	20	
상수도공	m	상수관로	1,007	
	EA	제수면실	7	
		소화전	2	
부대공	m	차선도색	1,316	
	EA	가로등	48	
	EA	공원등	20	
	EA	CCTV	2	
조경식재	주	교 목	201	
		관 목	9,730	
	본	허 브	3,450	
	m ²	잔 디	2,350	
기 타	m ²	화장실 1동	1	8.0m×3.2m

5.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본관 4층)

7. 의견제출 기간: 공람기간 내 서면제출

8. 본 내용은 개별통지를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